

사건번호	2018허6832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6원3934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내마모성 및 자유유동성을 갖는 글리코시아민-함유 몰딩 및 그의 제조방법
선고일	2019. 4. 4.	선고결과	기각

글리코시아민 함유 성형체의 입자크기 등에 관한 수치 한정에 임계적 의의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을 비교하면, 양 발명은 글리코시아민을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글리코시아민 함유 성형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구성요소 3, 4 부분). 다만, 제1항 발명은 최종 생성된 성형체의 부피 밀도를 '350 내지 850 kg/m³'으로, 입자 크기를 '32 내지 1000 μm'로 각 한정하면서, 입자 분포와 관련하여 '상기 입자의 10 중량% 미만은 100 μm 미만이고, 상기 입자의 10 중량% 미만은 850 μm 보다 큰 것'으로 추가 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구성요소 1, 2, 5 부분). 한편, 선행발명 2는 사료첨가제로 이용되는 메티오닌-함유 성형체에 관한 것으로서, 최종 생성된 성형체의 부피 밀도와 입자 크기를 일정 범위로 각 한정함으로써 사료첨가제용 성형체의 내마모성 및 자유유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개시하고 있다(구성요소 1, 2 부분). 이와 같은 대비 내용에 의하면, 제1항 발명은 ① 선행발명 1의 한정된 함량의 글리코시아민이 포함된 성형체에, 선행발명 2의 한정된 입자 크기 및 부피 밀도를 결합하고, 여기에 ② 한정된 입자 분포가 부가된 발명이라 할 것이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를 도출하기 위하여 결합된 것은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3, 4와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 1, 2이므로, 제1항 발명의 성형체에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출원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인 '내마모성 및 유동성 개선'의 측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3, 4와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 1, 2의 단순 결합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선행발명 1에 일정 함량의 글리코시아민-함유 성형체가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 성형체의 부피 밀도 및 입자 크기를 각 일정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선행발명 2의 실시예 1 및 3을 살펴보면, 압출 성형물의 입자 크기가 각각 '400 내지 1,000μm', '600 내지 1,000μm'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입자 크기 범위 내에 완전히 포함된다. 한편 출원발명 명세서에서 상기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미와 관련된 기재를 찾아볼 수도 없고, 출원발명의 각 실시예에 따른 표를 살펴보더라도 각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나 현저한 효과를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최종 성형체의 입자 크기 분포를 다시 수치로 한정한 구성요소 5의 부가로 제1항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 수치한정 범위를 경계로 효과의 현저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일정 함량의 글리코시아민-함유 성형체에,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최종 성형체의 부피 밀도 및 입자 크기 범위를 단순 결합하고, 여기에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입자 분포 범위를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단순 결합 및 단순한 수치한정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수치한정, 글리코시아민

사건번호	2018허7651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8당371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마이크로 커터가 형성된 각질제거판과 이를 이용한 각질제거기
선고일	2019. 4. 4.	선고결과	기각

주방용 강판을 각질제거기에 관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절삭날의 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은 발바닥이나 손바닥의 굳은살 등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제거판과 이를 이용한 각질제거기에 관한 것으로 미용분야에 이용되는 발명이고, 선행발명 1은 치즈, 야채, 과일 등을 갈기 위한 강판에 관한 것으로 주방분야에 이용되는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나, 양 발명 모두 절삭 대상물을 일정한 두께로 절삭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세한 절삭날이 다수 배열된 판'으로 구성된 점에서 그 적용된 기술적 구성 또는 과제해결 수단이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근거가 된다.

양 발명은 도구의 용도에 차이가 있고(차이점 1), 특허발명은 평면 돌출판이 외측면으로부터 0.5mm 이하의 높이로 돌출 형성되는 것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날이 기판의 외측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높이의 수치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은 절삭날이 위치한 평면 돌출판이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연결부가 평면 돌출판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날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 형상이고 연결부가 날의 양 측부 폭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미세 칼날부의 위치,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차이점 1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선행발명 1의 날에 '적정 두께의 각질 제거'라는 효과를 위한 선행발명 4에 나타난 각질제거기 날의 돌출 높이의 수치한정을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차이점 3의 경우 특허발명은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 돌출판이 평면상에서 연결부로부터 볼록하게 형성되어 다양한 방향에서의 각질제거가 가능하고 양 측면부 절삭날이 꼭지부 절삭날을 따라 순차적으로 각질 내로 삽입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쉽게 각질이 제거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주로 양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선행발명 4에 개시된 날은 그 기본적인 형상 및 구조 자체가 특허발명과 다르다. 따라서 선행발명 1 및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4의 결합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발명을 선행발명 5와 비교하더라도, 선행발명 5는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부위가 6개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를 통해 기판의 외측면과 연결되어 있고, 절삭날이 6개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 양측부 직선 부분,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주위와 연결부 사이의 오목한 부분, 통과홀과 접하는 외측면 선단에 각 형성되어 있다. 즉 특허발명의 절삭날은 각질제거판(또는 그의 외측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위치한 돌출판의 형상에 따라 '평면적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절삭날이 동시에 각질 내로 삽입되지 않고 볼록하게 형성된 부분의 꼭지부 절삭날부터 각질 내로 삽입되고 양 측면부 절삭날이 꼭지부 절삭날을 따라 순차적으로 각질 내로 삽입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쉽게 각질이 제거되나, 선행발명 5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 또는 5 및 4의 결합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기술분야, 진보성, 각질제거, 절삭날, 평면, 돌출판, 다양한 방향, 순차적

사건번호	2018허7941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6원3394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철도차량용 차축과 그 제조방법
선고일	2019. 4. 4.	선고결과	기각

철도차량용 차축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배관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이음매 없는 강철 튜브인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1은 철도차량용 차축인데 비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석유 산업 또는 다른 구조재 및 압력용의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배관이라는 점(차이점 1-1), 구성요소 1에서는 가공방법으로 '단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2).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조된 관이 탄소와 망간을 포함하고, 강철(잔부 철) 합금재료로 이루어지고, 망간 성분의 조성비가 대부분 중첩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탄소의 조성비에 있어서 구성요소 2는 0.32-0.42 중량%인데 비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0.24-0.28 (중량%)인 점 및 선행발명 1에는 철, 탄소, 망간 외에도 규소, 황 및 그 밖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차이점 2)가 있다.

차이점 1-1에 대하여 보면, 강관을 유체의 이송을 위한 수단 이외에도, 차축 등 동력전달용 부품에 적용하는 것은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고, 선행발명 1에서는 강관의 적용 분야로서 '구조재(structural member)'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력전달을 위한 차축 등 차량용 부품이 포함되므로,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자동차 부품인 '철도차량용 차축'에 사용될 수 있는 강관에 관한 사항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에 관한 기재를 보고, 이를 '철도차량용 차축' 분야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거나, 이를 철도차량용 차축에 적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차이점 1-2에 대하여 보면, 단조공법은 차축 등 소정의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널리 적용되어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이고, 단순히 '단조'라는 가공방법을 명시한 것이 선행발명 1에서 예견할 수 없는 정도의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비록 선행발명 1에 단조 가공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특별한 창작상의 곤란을 겪지 않고서도 선행발명 1에 단조 가공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이점 2의 경우, 선행발명 1에는 출원발명과 중첩되는 0.24 - 0.28 중량%의 탄소가 함유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제1항 발명과 실질적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최소항복강도 등 기계적 물성값이 얻어진다. 또한 이와 같은 탄소의 함량은 모두 아공석(hypoeutectoid) 조성범위(0.22 - 0.75 중량%)에 속하는데, 공업용으로 생산되는 대부분의 강은 아공석 조성범위의 탄소함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의 탄소 조성의 수치범위는 선행발명 1의 탄소 조성범위와 실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발명의 수치범위를 전후로 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얻어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차이점 2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에 출원발명은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차축, 단조, 동력전달, 수치한정, 기술분야

사건번호	2018허6573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7당1580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맞물린 축조유닛들을 갖춘 옹벽구조물과 이를 축조하는 방법
선고일	2019. 4. 4.	선고결과	기각

옹벽구조물을 축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서, 축조유닛의 종류를 콘크리트블록에서 모래자루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안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기술적 의의는 모래자루 또는 흙자루로 된 각 층의 축조자재 사이에 돌출부가 있는 연결부재를 위치시켜 내구성이 향상된 옹벽구조물을 제공하는데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콘크리트블록의 축조자재 사이에 돌기부가 형성된 판을 위치시킴으로써 모르타르 등과 같은 다른 결합부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축조자재 사이의 상대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돌기부가 형성된 판을 사용하여 축조유닛을 쌓을 경우 시공과정이 간단하게 되어 시공 시간이 단축되며 옹벽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선행발명 1은 콘크리트 블록의 시공과 관련된 발명이기는 하지만 옹벽 구조물 건축의 작업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돌출부가 형성된 연결판을 사용한다는 기술사상은 반드시 콘크리트 블록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의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축조유닛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사용되던 다른 축조유닛으로 쉽게 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모래자루 또는 흙자루는 당시 흔히 사용되던 축조유닛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콘크리트블록을 모래자루 또는 흙자루로 치환하여 용이하게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축조유닛, 돌출부, 콘크리트블록, 옹벽, 시트부재

사건번호	2018허8142	사건명	취소결정(특)
심판번호	2017소18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신청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세퍼레이터 제조 방법 및 슬릿 방법
선고일	2019. 4. 4.	선고결과	기각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공고된 위 특허를 특허취소신청에 의해 취소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2는 슬릿된 세퍼레이터의 일부와 다른 일부가 제1 롤러 둘레 방향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격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식별번호 [60]에 기술된 실시예(이하 "변형예"라 한다)에는 재단된 자기 테이프들이 구동 롤러 상의 둘레 방향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구성요소 1-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도 1에 나타난 구동 롤러 및 1쌍의 님 롤러는 흡인수단을 형성한 구동 롤러(이하 '석션 롤러'라 한다)로 치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님 롤러에 의해 구속되어 있던 상부측 자기 테이프는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므로 상부측 자기 테이프는 하부측 자기 테이프와는 다른 위치에서 이격될 것이다.

② 선행발명 1은 주행진동을 차단하는 것을 주된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주행진동은 재단된 자기 테이프가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은 상태로 이송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므로, 선행발명 1의 변형예는 주행진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재단된 상하 자기 테이프를 긴장된 상태로 권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상부측 권취 롤러 또는 구동 롤러의 장력이 석션 롤러를 나온 상부측 자기 테이프에까지 미쳐 재단된 자기 테이프는 쳐지지 않은 상태가 될 것이어서 상부측 자기 테이프의 이격 위치는 위로 이동하게 되므로 상하부 자기 테이프의 이격 위치는 서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③ 다만 님 롤러를 석션 롤러로 대체하는 경우 석션 롤러의 흡인력이 자기 테이프에 작용하고 있어 재단된 자기 테이프가 석션 롤러의 어느 위치에서 이격될지가 불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재단 대상물의 물성을 감안하여 석션 롤러의 흡인력을 조절할 수 있어 재단된 대상물에 작용하는 흡인력의 크기 및 작용 범위를 권취 롤러나 구동 롤러의 장력보다 크지 않게 설정할 수 있는 점, 선행발명 1은 자기 테이프가 석션 롤러에 진입하는 각도와 진출하는 각도를 달리하여 자기 테이프가 석션 롤러를 원호형상으로 감싸는 한편, 면접촉 부분을 당접수단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구성을 통하여 주행진동 차단효과를 가지므로 석션 롤러의 흡인력을 낮추더라도 진입·진출각에 차이가 있어 주행진동 차단 효과는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석션 롤러의 흡인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행진동 차단 효과를 감쇄시키지 않으면서도 재단된 대상물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격시키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1, 1-3, 1-4는 슬릿 대상물이 세퍼레이터 원단인 반면, 선행발

명 1은 재단 대상물이 자기 테이프 웹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자기 테이프를 작업 대상으로 하는 선행발명 1(변형예)을 세퍼레이터를 작업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쉽게 도입할 수 있고, 구성요소 1-5의 세퍼레이터를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도 개시한 바와 같이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하므로 위 차이점들은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 기술에 의하여 쉽게 극복이 가능하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 및 주지관용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특허, 취소결정, 통상의 기술자, 선행발명, 주지관용 기술, 진보성, 슬릿, 세퍼레이터, 원단, 테이프, 롤러, 장력

사건번호	2018허8753	사건명	등록취소(상)
심판번호	2017당912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선고일	2019. 4. 4.	선고결과	인용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아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7. 3. 2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울(체중계)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원고 회사 및 상품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이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된 한글로 된 회사 안내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홈페이지 개설 당시 홍보의 대상으로 국내의 수요자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어도 2013. 6. 24. 경부터 2014. 12. 18. 까지 「Product Gallery」 항목에 「Health care system “iFit”」 라는 설명과 함께 표장이 표시된  체중계 및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Product Review」 항목에 위 체중계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표시하였다. 비록 위 홈페이지에  제품 설명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품 중에 표장이 표시된 체중계 및  플리케이션 제품이 있다는 정보를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내 일반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리기에는 충분해  보이므로, 이는 상품의 국내  광고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과 실사용표장  은 그 색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형태가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가 홈페이지에 사용한 실사용표장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7. 3. 27.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지정상품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울(체중계)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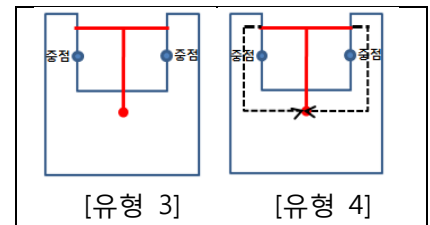
키워드: 상표, 불사용, 취소, 광고, 사용, 저울

사건번호	2018허3741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7당1876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
선고일	2019. 4. 5.	선고결과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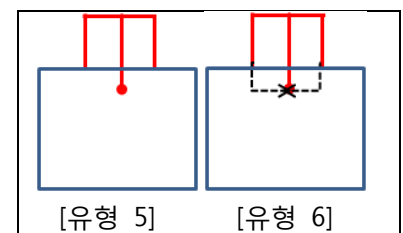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 내지 5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항 발명은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그 한 개 면 또는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는 클리어런스 영역을 형성하고, 제1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위치하되 그 양단이 '클리어런스 영역의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면에서 그 각 면의 양단 중 위 외부로 오픈된 면과 접하는 각 일단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방사체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클리어런스 영역이 한 개 면은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라운드로 둘러싸인 형태인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실시례에서는 제1, 2 회로부가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서 T자 구조로 배치되되, 유형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T자 구조의 수평한 부분에 해당하는 제1 회로부가 좌우측 그라운드면의 중점보다 윗부분에서 그라운드와 연결되며, 이러한 경우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유형 4의 점선 화살표 부분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발명 2 내지 5는 1항 발명의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앞서 본 바와 같이 1항 발명은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라운드의 일부를 제거하여 클리어런스 영역을 형성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2, 3, 5에는 그라운드의 일부가 제거된 영역인 클리어런스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2, 3, 5에는 안테나 패턴이 연결될 좌우측 그라운드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항 발명의 제1 회로부에 해당되는 선행발명 2, 3, 5의 대응구성요소의 양단은 하방으로 꺾여 급전부가 위치한 아래 측 그라운드면에 연결되는 형태(이하 'M자 구조'라 한다)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2, 3, 5의 경우에는 제1, 2 회로부가 유형 5처럼 M자 구조로 배치되고,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유형 6의 점선 화살표 부분과 같을 것이다. ②앞서 본 유형 4와 유형 6을 대비하면, 유형 4의 경우 그라운드가 일부 잘려나간 클리어런스 영역 내에 제1, 2 회로부를 T자 구조로 배치함으로써 유형 6에 비하여 오픈된 면에 접하는 좌우측 그라운드면을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에서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유형 4에서는 유형 6보다 더 넓은 범위의 그라운드 영역을 방사체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라운드 영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영역도 넓어져, 광대역 및 다중대역 특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이다. ③ 선행발명 4에는 안테나 패턴을 둘러싸는 그라운드 면을 활용할 수 있는 '외형상 두 개 면이 외부로 오픈되고 나머지 면들이 그라운드에 둘러싸인 형태의 클리어런스 영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회로부의 양단에 대응되는 전송 선로(12) 및 가변 용량 다이오드(13B)가 선행발명 2, 3, 5와 같이 하방으로 꺾여 급전부가 위치한 아래쪽 그라운드 면에 연결되므로, 그라운드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결국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 부분 중 그라운드 영역이 담당하는 길이는 앞서 본 유형 6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④ 한편 선행발명 2의 "전류가 루프상에서 일정하다면, 루프를 인덕턴스 L을 갖는 방사 인덕터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L은 와이어 또는 PCB 트레이스의 인덕턴스이다. 이 인덕턴스 L은 캐패시터 C와 함께 공진회로를 형성한다."라는 기재와 선행발명 5의 "안테나 기판의 판형 도체와 회로 기판 124의 그라운드 도체가 고주파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회로 기판 124의 그라운드 도체를 안테나의 일부로서 동작시키고 높은 방사 이득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 5가 그라운드 영역을 방사체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인식하에 발명되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언급한 '그라운드 영역을 단순히 방사체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1항 발명은 이를 넘어서 제1 회로부(안테나 패턴)가 클리어런스 영역(그라운드에 일부 둘러싸인 영역) 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제1 회로부(안테나 패턴)의 양 단자 사이의 거리를 가능한 한 멀리 이격시킴으로써 그라운드 자체의 인덕턴스 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테나 방사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더욱이 선행발명 2, 3, 5의 M자 구조는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제4 실시례와 같은 형태로서 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그라운드, 방사, 안테나, 클리어런스, 전류, 인덕턴스, 방사효율, M 자구조

사건번호	2018 허 3871	사건명	등록취소(상)
심판번호	2016 당 1120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실사용표장)
선고일	2019. 4. 5.	선고결과	인용

통상사용권자 A 가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표장을 A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행위를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A는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된 2013. 1. 31. 이후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3. 4. 29.부터 2013. 7. 26. 폐업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인 이 사건 웹사이트 및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함으로써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A는 회사 설립일 이후 회원으로 가입하고 A에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소상공인 등이 이 사건 웹사이트 또는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광고 게시판에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직접 광고를 하고 고객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②비록 A는 2013. 7. 26. 폐업하였으나, ③A는 2012. 10. 5. 무렵 웹호스팅업체인 카페24와 서비스기간을 2012. 10. 5.부터 2014. 1. 4.까지로 정하여 웹호스팅계약(서비스명 : 가상 서버 퍼스트클래스)을 체결함으로써 적어도 A의 폐업일 이후인 2014. 1. 4.까지는 이 사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사건 웹사이트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 그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비록 A가 스포츠서울이 선정하는 ‘베스트 이노베이션기업&브랜드’ 중 마케팅 혁신 부문에 선정된 것이 2012년의 영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이 A의 폐업일(2013. 7. 26.) 직후인 2013. 9. 6.에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기간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3. 4. 29.부터 A의 폐업일인 2013. 7. 26.까지의 기간과도 매우 근접해 있는 점(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볼과 4 내지 7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⑦A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회원인 소상공인으로부터는 월 사용료를 지급받아 왔는바, A가 폐업일 이전에 이 사건 서비스를 무단으로 중단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⑧더욱이 소상공인 회원과 달리 별도의 사용료를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웹사이트나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상공인이 게시한 광고를 검색할 수 있는 개인회원도 2012. 10. 8. 기준 284명 정도 가입된 것으로 검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폐업일 이전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2013. 4. 29.부터 A의 폐업일인 2013. 7. 26. 이전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 및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에 실사용표장이 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는 적어도 폐업일인 2013. 7. 26. 이전까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웹사이트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㉔A는 2011년 무렵 작성한 이 사건 서비스를 소개하는 사업소개 자료에서 A의 회사 로고 'directAd'와는 별도로 이 사건 서비스의 로고 중 하나로 특정한 실사용표장의 형상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단인 이 사건 웹사이트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 좌측 상단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는 등 A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실사용표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웹사이트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㉕A의 이 사건 서비스는 이 사건 웹사이트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되었는바, 2012. 1. 19. 무렵 이 사건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에 실사용표장이 표시되어 있었고, 2012. 1. 30. 무렵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의 좌측 상단에도 실사용표장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비록 실사용표장이 직접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2. 10. 11. 무렵 페이스북에도 이 사건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문구와 함께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아이콘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㉖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년 7월 무렵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이 2013. 12. 18. 저장한 이 사건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의 웹페이지를 검색하였고, 그 검색된 웹페이지에는 아래 화면과 같이 화면 좌측 상단에 어떠한 이미지가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  ' 표시만 되어 있는바, 웨이백 머신이 2013. 12. 18. 저장한 위 웹페이지의 소스코드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웹사이트가 종래에는 웨이백 머신이 저장한 위 웹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 등의 파일을 "http://allways.co.kr/assets/css/style.css"에 링크하여 불러왔는데, 원고와 카페24 사이의 웹호스팅계약이 2014. 1. 4. 만료됨에 따라 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웨이백 머신이 2013. 12. 18. 저장한 위 웹페이지의 소스코드 중 기존 카페24의 서버에 링크하여 불러왔던 파일의 경로를 이 사건 웹사이트 백업파일의 "assets/css/style.css" 폴더 등으로 변경하면 웨이백 머신이 2013. 12. 18. 저장하였던 위 웹페이지를 카페24 측이 제공한 이미지 파일과 연결하여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원한 이 사건 웹사이트의 2013. 12. 18.자 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아래 화면과 같이 실사용표장이 표시되어 있다. ㉗비록 2012. 1. 19. 무렵 이 사건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의 구성과 원고가 위와 같이 복원한 이 사건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의 구성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실사용표장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웹사이트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에 실사용표장이 표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A가 이 사건 웹사이트와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에 표시해왔던 실사용표장을 삭제하거나 다른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변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A가 이 사건 웹사이트나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에 표시한 실사용표장을 삭제하거나 다른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카페24 사이의 웹호스팅계약은 2014. 1. 4. 만료되었으나, A가 위 계약 만료일 이전으로서 폐업일인 2013. 7. 26. 이전에 이 사건 웹사이트나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을 폐쇄하였다거나 카페24와의 웹호스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㉙실사용표장은 문자부분의 색상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로 보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로,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키워드: 상표, allways, 불사용취소, 서비스표, 사용, 실사용표장, 거래관념, 동일